

# 법 률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명숙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이 용 섭  
장 관

## ○법률 제7972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가감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273조의2의 제목 중 “개인간 주택거래”를 “주택거래”로 하고, 같은 조 중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유상거래”로,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

제16329호(그2)

관  
공

2006. 9. 1. (금요일)

다.

③(재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2006년도 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며, 8. 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50퍼센트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 설정(법 제188조제3항)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

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나.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 인하 조정(법 제195조의2)

현행 재산세 부담의 상한인 직전연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인하하여 조정함.

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인하(법 제273조의2 및 부칙 제2항)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25퍼센트 경감하고, 등록세를 50퍼센트 경감하던 것을 개인 간 거래인지 법인과의 거래인지 구분할 필요 없이 동일하게 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퍼센트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된 법률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법제처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WWW.moleg.go.kr](http://WWW.moleg.go.kr)  
국회 홈페이지 : [WWW.assembly.go.kr](http://WWW.assembly.go.kr)